

제322회 정례회
2013. 7. 17.(수)

심 사 보 고 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7.(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3년 6월 21일
-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4일
- 라. 상정일자 : 2013년 7월 5일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 가. 제안이유
 - 관광산업 발달·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 제천소방서에서 32km 떨어진 단양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단양소방서 신축》

- 사업기간 : 2013. 08. ~ 2014. 06.
- 위 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
 - ※ 부지 : 1,530㎡(단양군에서 신축부지 제공)
- 사업규모 : 연면적 2,300㎡(지하1/지상3층, 철콘)
- 사 업 비 : 3,868,740천원
 - (건축 3,650,100, 설계비 등 218,640)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관광산업 발달,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귀농인구 증가에 따라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제천소방서에서 32km 떨어진 단양 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재난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어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단양소방서를 신설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도내 타 지자체 소방서에 비해 적은 부지 및 건축규모를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소방활동의 수행을 위해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제11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2013.7.2 단양군 의회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안 등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504 호

제출연월일 : 2013년 6월2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관광산업 발달·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 제천소방서에서 32km 떨어진 단양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단양소방서 신축》

- 사업기간 : 2013. 08. ~ 2014. 06.
- 위 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
- 사업규모 : 연면적 2,300㎡(지하1/지상3층, 철콘)
- 사 업 비 : 3,868,740천원(건축 3,650,100, 설계비 등 218,640)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3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31,711	2,110,335			2	31,711	2,110,335	
		건물	4	6,900	13,111,515	1	2,300	3,868,740	5	9,200	16,980,255
		기타									
	매입	토지	1	2,354	642,485			1	2,354	642,485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29,357	1,467,850			1	29,357	1,467,850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4	6,900	13,111,515	1	2,300	3,868,740	5	9,200	16,980,255
		기타									
분	계	토지	3	62,115.1	9,190,425			3	62,115.1	9,190,425	
		건물									
		기타									
	매각	토지	2	43,458.1	7,723,100			2	43,458.1	7,723,100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18,657	1,467,325			1	18,657	1,467,325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 건	2,300	3,868,740				
	기타							
1	토지							
	건물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	2,300	3,868,740	2014. 6.	단양소방서 신축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